

[별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 등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제2조 관련)

1.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

번호	영역	세부 심사기준
1.	한국어학	한국어의 다양한 특징과 현상, 한국어의 음운·문법·어휘·의미·화용·역사·어문규범 등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일반 언어의 보편적인 구조와 특징, 음운·문법·어휘·의미·화용·역사 등의 일반언어학 하위 분야 내용 또는 일반언어학의 연구 결과를 실용적인 문제에 적용하는 응용언어학 하위 분야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법 전반에 해당되는 내용, 한국어의 음운·문법·어휘·의미·화용·역사·어문규범 등의 교육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4.	한국문화	한국어교육에 필요한 한국의 역사·민속·철학·정치·경제·사회·지리·예술 등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5.	한국어교육 실습	한국어교육을 실제로 하거나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을 참관하는 등 한국어교육 실습을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

2. 대학 또는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의 세부 심사기준

영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은 학사, 석사 또는 박사 과정별로 각각 분리하여 적용한다.

3.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의 세부 심사기준

가. 강의시간은 50분을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의 1시간 단위로 한다. 다만, 원격교육(방송·통신·인터넷 등에 의하여 원격으로 교육을 하는 것을 말한다) 방법에 따른 강의시간은 과목의 내용에 대한 강의로 구성된 25분을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의 1시간 단위로 한다.

나. 최초 수업일부터 만 2년 이내에 모든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